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방문의료 지원근거 마련〉
■ 홍문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429호)

202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석면환경보건센터의 방문의료 지원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9
1.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9
2. 충청남도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개요	10

I. 제안경위

2022년 4월 28일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연구와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등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잠복기가 30년 이상이 지나서 발견되기도 하여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조사·관리 이외에도 방문의료 서비스를 통한 진찰 등이 필요하므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과 같이 석면환경보건센터에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석면환경보건센터 업무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

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Ⅲ. 검토의견

1. 석면환경보건센터의 방문의료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은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을 명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	4. ----- -----

현행	개정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5. (생략) ②·③ (생략)	-----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함)받은 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석면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발굴함으로써 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음(§44·47).

2022년 7월 기준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석면의 건강영향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대행하는 석면환경보건센터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2개소¹⁾로, 이들 기관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건강검진, 건강피해 조사, 석면노출 우려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관련 현행법 규정]

법 제44조(진찰요구 등) ②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조사 및 연구)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7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재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법률에서 명시한 석면 관련 조사·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석면피해에 대한 효율적·전문적 지원을 위해서는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석면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중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에 석면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의료 지원업무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석면피해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른 방문의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확인, 석면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교육,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및 의료복지 상담, 중증질환자에 대한 정밀검사·진료 예약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²⁾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문의료 지원의 참고 사례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으며,³⁾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보건소 차원에서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주민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석면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 지원의 성격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한정된 예산·인력을 고려할 때, 센터 차원에서 방문의료를 실시하기보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석면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적인 진단·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방문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석면피해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석면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받은

2) 국가 차원에서 석면피해자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한 사례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석면피해자에 대해 방문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충청남도, 2020~2021년). 세부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3)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사람들로,⁴⁾ 이들 석면피해자는 방문의료를 통한 일반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의료복지 상담보다는 전문인력·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후속 진단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임.

물론, 석면피해자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석면피해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총 인원이 12명, 연간 예산이 5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⁵⁾ 센터의 업무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안 제47조의2제4항은 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 제25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용도로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⁶⁾ 기금을 통한 지원과 별도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임.

4) **법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참고자료] 참조

6) **법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문 의 처
02)6788-5537

※ 참고자료

1.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황

※자료: 환경부

□ (배경) 석면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11년~) 석면 관련 조사·연구 및 주요 석면노출원의 건강영향조사를 통하여 피해자 발굴 사업 수행

□ 주요 기능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 관련 조사·연구
-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건강영향조사

□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구 분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위치	충북 천안시	경남 양산시
유효기간 (최초 지정일)	2021.5.29. ~ 2024.5.28. ('11.6.24.)	2021.5.29. ~ 2024.5.28. ('11.6.24.)
사업시행방법 (보조금 지원률)	민간보조 (건강영향조사 100%, 조사연구 70% 지원)	
총사업비('22년)	3.6억원(국비 3.1억원)	1.4억원(국비 1억원)
인력('22년)	7명(연구원 4, 사무원 3)	5명(연구원 5)
운영사업('22년)	조사연구/영향조사(2,000명 검진)	조사연구

2. 충청남도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개요

I.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 석면피해자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한 건강상태 체크
- ☐ 건강관리교육(금연, 호흡기 재활 등)을 통한 석면폐질환 예방 · 관리 방법 제공
- ☐ 석면피해구제 제도 안내 및 의료복지 상담
- ☐ 등급조정 신청 지원(서류발급 및 접수)
- ☐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및 중점 관리 지원

2. 기간 및 절차

- ☐ 수행기간 : 2020년도, 2021년도
- ☐ 대상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 ☐ 사업대상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자
- ☐ 구성
 - 시간 : 60분/1인
 - 항목 : ▶ 현재상태 (체온, 체중, 키 등)
 - ▶ 질병력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혈압, 기타질환)
 - ▶ 흡연력 (과거/현재 흡연력)
 - ▶ 예방접종 (폐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 호흡곤란 (호흡곤란 증상 정도 확인)
 - ▶ 흉부통증 (통증정도, 통증빈도, 통증심각성)
 - ▶ 기타 호흡기관관련 증상 (만성적/최근3개월 이내 발현 증상)
 - ▶ 건강관리 교육 (호흡재활교육, 금연교육, 석면폐질환 사후관리 교육 등)
 - ▶ 정보제공 - 신청서류, 등급조정 등 석면피해 구제제도
 - 석면질환에 따른 관리방법 등
 - ▶ 진료예약 (직업환경의학과 및 호흡기내과 진료예약)

□ 진행절차

1) 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 석면피해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후 신청자 접수(선착순 마감)

2) 전화상담

- 참여율 확보 (안내전화 등)
- 실제 거주 주소 및 연락처 재확인 후 방문일정 확정

3) 방문서비스 진행

II. 추진내용

1) 2020년 참여자 피해인정 질병

(단위 : 명)

인정질병	인원
악성종피종	4
폐암	58
석면폐증1급	41
석면폐증2급	107
석면폐증3급	290
계	500

2) 2021년 참여자 피해인정 질병

(단위 : 명)

인정질병	인원
악성종피종	2
폐암	24
석면폐증1급	21
석면폐증2급	152
석면폐증3급	301
계	500